# 주요 노동동향

## 생산 및 물가 동향

### ◈ 2022년 2월 생산은 전월대비 0.2% 감소(전년동월대비 4.3% 증가)

○ 전산업 생산은 공공행정, 광공업에서 생산이 늘었으나, 건설업, 서비스업에서 생산이 줄어 전월대비 0.2% 감소함.
  - 전년동월대비로는 광공업, 서비스업, 공공행정에서 생산이 늘어 4.3% 증가함.

○ 제조업 생산은 기계장비, 화학제품 등에서 줄었으나, 반도체, 전자부품 등에서 늘어 전월대비 0.5% 증가함(전년동월대비 +6.2%).

○ 서비스업 생산은 보건 · 사회복지 등에서 늘었으나, 숙박 · 음식점, 예술 · 스포츠 · 여가 등에서 줄어 전월대비 0.3% 감소함(전년동월대비 +3.8%).

### ◈ 2022년 2월 소비는 전월대비 0.1% 증가, 설비투자는 전월대비 5.7% 감소

○ 소매판매액지수는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4.4%), 신발 및 가방 등 준내구재(-0.6%) 판매가 줄었으나, 승용차 등 내구재(9.4%) 판매가 늘어 전월대비 0.1% 증가함(전년동월대비 +1.6%).

○ 설비투자는 선박 등 운송장비(-17.9%) 및 특수산업용기계 등 기계류(-1.2%) 투자가 모두 줄어 전월대비 5.7% 감소함(전년동월대비 +2.1%).

○ 건설기성(불변)은 전월대비 8.5% 감소 , 건설수주(경상)는 전월대비 27.3% 감소함.

〈표 1〉 최근 경제일반 동향

(단위 : %, 전기(월)대비, ( ) 안은 전년동월대비)

| | | 연간 | | | 분기 | | | | 분기 | | | | 월 | | |
|---|---|---|---|---|---|---|---|---|---|---|---|---|---|---|---|
| | | | | | 2020 | | | | 2021 | | | | 2021 | 2022 | |
| | | 2019 | 2020 | 2021 | 1/4 | 2/4 | 3/4 | 4/4 | 1/4 | 2/4 | 3/4 | 4/4 | 2월 | 1월p | 2월p |
| 생산 | 전산업 | 1.0 | -1.1 | 4.9 | -1.5 | -2.9 | 2.9 | 1.3 | 1.7 | 0.6 | 0.9 | 1.5 | 2.0 | -0.3(4.3) | -0.2( 4.3) |
| | 광공업 | 0.4 | -0.3 | 7.4 | -0.5 | -6.0 | 5.7 | 2.6 | 3.7 | -0.6 | 1.0 | 1.1 | 3.2 | 0.3(4.2) | 0.6( 6.5) |
| | 제조업 | 0.5 | -0.2 | 7.6 | -0.5 | -6.4 | 6.2 | 2.5 | 3.9 | -0.7 | 0.9 | 1.3 | 3.5 | 0.2(4.3) | 0.5( 6.2) |
| | 건설업 | -2.3 | -2.1 | -6.7 | 1.7 | -2.3 | -2.5 | 1.3 | -5.2 | -1.9 | -1.1 | 4.1 | 4.3 | -0.4(6.0) | -8.5(-4.7) |
| | 서비스업 | 1.4 | -2.0 | 4.4 | -2.9 | -1.5 | 2.2 | 0.9 | 0.6 | 1.7 | 1.1 | 1.5 | 1.6 | -0.4(4.7) | -0.3( 3.8) |
| 소비 | 소비재 판매 | 2.4 | -0.2 | 5.9 | -5.9 | 5.3 | -0.4 | 1.1 | 1.7 | 2.2 | 0.8 | 1.1 | -0.9 | -2.1(4.7) | 0.1( 1.6) |
| 투자 | 설비투자 | -5.6 | 5.9 | 9.6 | -2.0 | 2.5 | 2.9 | 1.4 | 6.0 | 0.7 | -0.8 | -0.2 | -2.6 | 2.1(0.1) | -5.7( 2.1) |
| 물가 | | 0.4 | 0.5 | 2.5 | 0.3 | -0.5 | 0.6 | 0.0 | 1.3 | 0.5 | 0.7 | 1.0 | 0.3 | 0.6(3.7) | 0.7( 4.1) |

주 : 1) 광공업 생산은 광업(B), 제조업(C),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D)을 포함.
2)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 개정)상의 13개 대분류(도소매업(G), 운수 및 창고업(H), 숙박 및 음식점업(I), 정보통신업(J), 금융 및 보험업(K), 부동산업(L), 전문 ·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N), 교육서비스업(P),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Q), 예술 ·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S), 수도 · 하수 ·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E))를 포괄함.
3) 2019년 이후 전산업 연간수치는 농림어업을 제외한 수치임.
4) 물가상승률 월별 자료는 순서대로 2021년 3월, 2022년 2월, 2022년 3월 기준임.
5) p는 잠정치임.
6) 생산, 소비, 투자의 분기 및 월 수치는 계절조정계열 전기(월)대비, 연간 수치는 원계열 전년대비임.
7) ( ) 안은 원계열 전년동월대비임.

자료 :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소비자물가동향』, 각호.

## ◈ 2022년 3월 소비자물가지수 전월대비 0.7% 상승(생활물가지수 전월대비 1.2% 상승)

○ 2022년 3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6.06(2020=100)으로 전월대비 0.7% 상승함(전년동월대비 4.1% 상승).

- 소비자물가지수의 지출목적별 동향을 보면, 전월대비 교통(5.5%), 음식 · 숙박(0.8%), 주택 · 수도 · 전기 · 연료(0.2%), 오락 · 문화(0.5%), 주류 · 담배(1.1%), 교육(0.1%), 의류 · 신발(0.1%)은 상승, 기타 상품 · 서비스는 변동 없으며, 통신(-0.1%), 식료품 · 비주류음료(-0.1%), 가정용품 · 가사서비스(-0.6%), 보건(-0.4%)은 하락함.
- 생활물가지수는 식품은 전월대비 0.5% 상승, 식품 이외는 전월대비 1.7% 상승하여 전월대비 1.2% 상승함.

## ◈ 2022년 2월 동행종합지수는 전월대비 0.3% 증가, 선행종합지수는 전월대비 보합

○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2p 상승함.

○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해 주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3p 하락함.

[그림 1]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 ·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추이(2015=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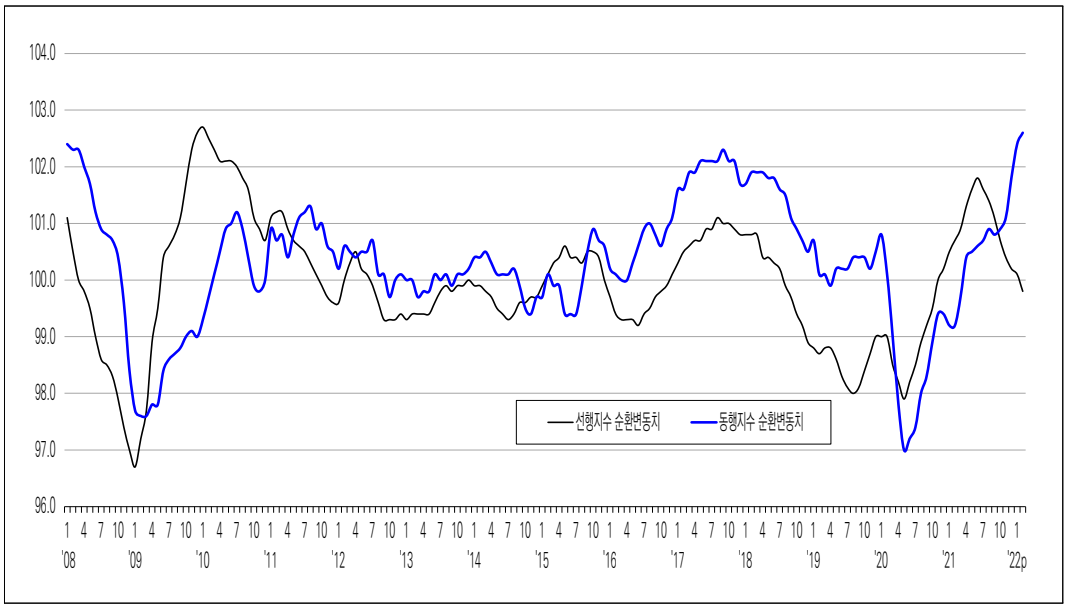


주 : p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경기종합지수』, KOSIS.

(이기쁨, 동향분석실 책임연구원)

# 고용 동향

## ◈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 증가폭 축소, 전월대비 취업자 수 감소

○ 2022년 3월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83만 1천 명 증가하여 증가폭이 축소됨(전월대비[1] 9만 4천 명 감소).

- (산업별) 전년동월대비 3월 제조업 취업자는 증가폭이 확대되고 건설업은 증가폭을 유지함. 서비스업은 운수창고, 음식숙박, 정보통신, 전문과학기술 등에서 증가폭이 축소됨.
- (연령별) 전년동월대비 3월은 30대에서 증가폭이 확대되고 그 외에서는 증가폭이 축소됨. 30대는 제조업에서 증가 전환되고 공공행정에서 증가폭이 확대됨. 60세 이상은 보건복지 및 운수창고에서 증가폭이 축소되고 공공행정에서 감소 전환됨.
- (종사상 지위별) 3월은 전년동월대비 임시직에서 증가폭이 축소됨. 상용직은 건설업, 도소매업 및 공공서비스에서 증가폭이 확대됨. 임시직은 대부분의 업종에서 취업자 증가폭이 축소 혹은 감소로 전환되거나 감소폭이 확대됨. 일용직은 건설업 및 협회단체에서 감소폭이 확대되고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운수창고에서 증가폭이 축소됨.
- (일시휴직자) 3월 일시휴직자는 전년동월대비 23만 5천 명 증가하여 증가 전환(2월 -9만 7천 명)됨. 전월대비로는 18만 9천 명 증가함.
- (실업자) 3월 전년동월대비 실업자는 34만 2천 명 감소하여 감소폭이 축소(2월 -39만 9천 명)됨. 전월대비로는 1만 명 감소함.

[그림 1] 취업자, 실업자, 비경활 증감 현황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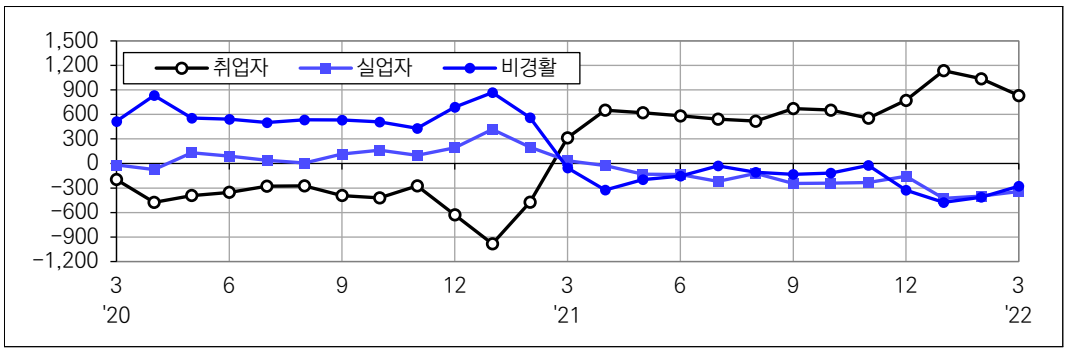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 본고에서 전월대비 수치는 통계청 계절조정계열 자료를 활용함.

[그림 2] 계절조정 취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실업자, 일시휴직자 변화

(단위 : 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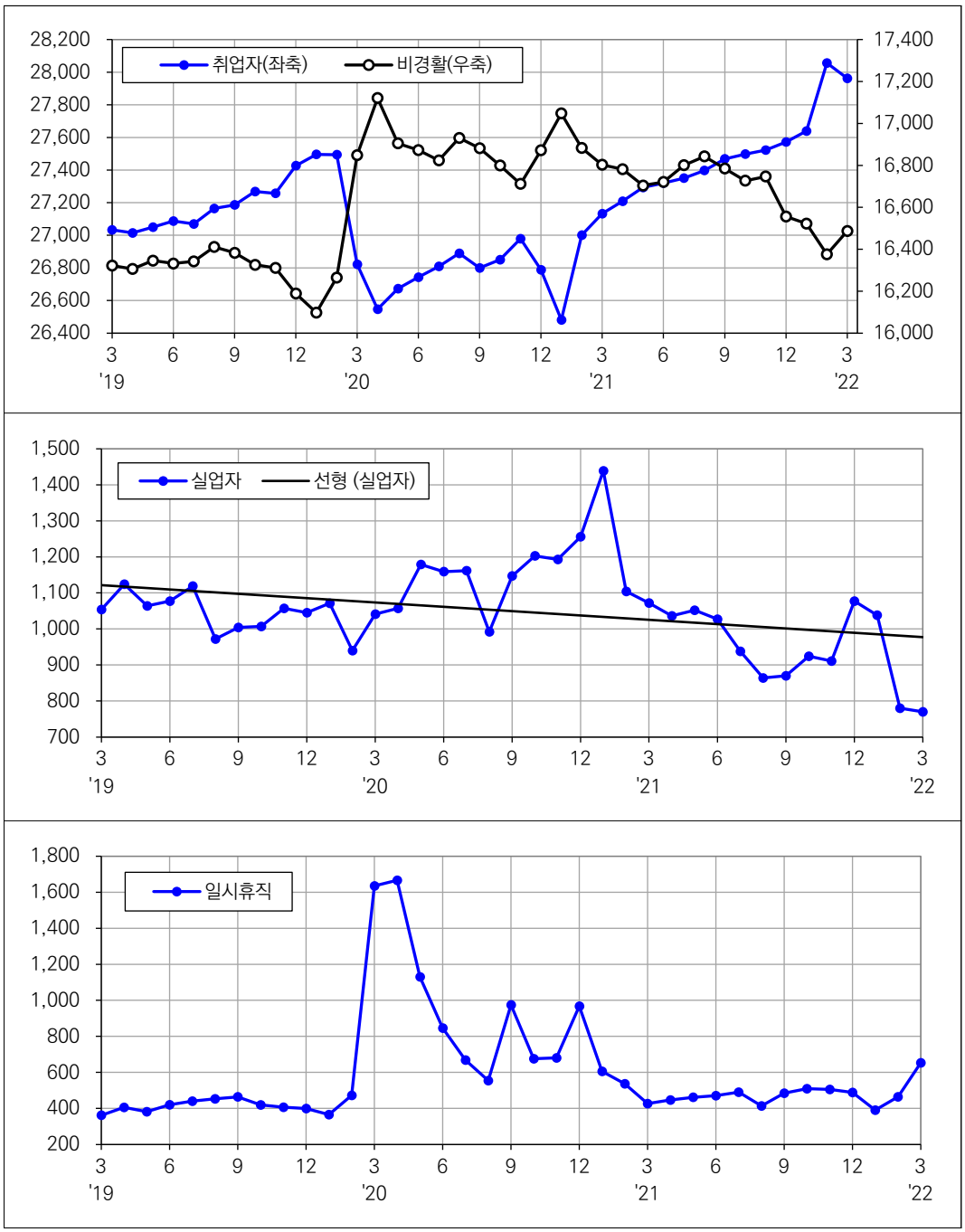


주 : 일시휴직자는 X-12 ARIMA를 이용하여 계절조정계열을 산출하였음.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2022년 3월 전년동월대비 취업자는 30대에서 증가폭이 확대, 그 외에서는 증가폭이 축소됨. 60세 이상은 전월대비로도 취업자는 크게 감소하고 실업 및 비경제활동인구는 증가함.

– 전년동월대비 20대는 음식숙박에서 감소 전환하고 정보통신 및 보건복지에서 증가폭이 축소됨, 30대는 제조업에서 증가 전환하고 공공행정에서 증가폭이 확대됨. 60세 이상은 보건복지 및 운수창고에서 증가폭이 축소되고 공공행정에서 감소 전환됨.

〈표 1〉 연령별 취업자 동향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 ) 안은 계절조정계열 전월대비)

| | 15~19세 | | | | 20대 | | | | 30대 | | | |
|---|---|---|---|---|---|---|---|---|---|---|---|---|
| | 1월 | 2월 | 3월 | (전월비) | 1월 | 2월 | 3월 | (전월비) | 1월 | 2월 | 3월 | (전월비) |
| 취업자 | 49 | 45 | 3 | ( 1) | 273 | 219 | 174 | (28) | 22 | 15 | 43 | (-4) |
| 실업자 | 1 | 1 | -3 | (-1) | -129 | -122 | -115 | (-2) | -97 | -76 | -79 | ( 1) |
| 비경활 | -154 | -142 | -90 | (-5) | -216 | -182 | -162 | (-45) | -62 | -74 | -98 | (-9) |
| 실업률 | -2.7 | -2.2 | -1.4 | (-0.6) | -3.6 | -3.3 | -3.0 | (-0.1) | -1.7 | -1.4 | -1.5 | (0.0) |
| 고용률 | 2.4 | 2.2 | 0.4 | (0.0) | 4.9 | 4.1 | 3.6 | (0.7) | 1.8 | 1.7 | 2.1 | (0.1) |
| | 40대 | | | | 50대 | | | | 60세 이상 | | | |
| | 1월 | 2월 | 3월 | (전월비) | 1월 | 2월 | 3월 | (전월비) | 1월 | 2월 | 3월 | (전월비) |
| 취업자 | 24 | 37 | 21 | (12) | 245 | 272 | 258 | ( 4) | 522 | 451 | 331 | (-233) |
| 실업자 | -36 | -30 | -40 | (-10) | -86 | -110 | -84 | (-10) | -80 | -61 | -22 | (33) |
| 비경활 | -64 | -80 | -54 | (-8) | -139 | -135 | -143 | (10) | 159 | 201 | 270 | (245) |
| 실업률 | -0.5 | -0.5 | -0.6 | (-0.1) | -1.4 | -1.8 | -1.4 | (-0.1) | -2.4 | -1.5 | -0.5 | (0.6) |
| 고용률 | 1.0 | 1.2 | 0.9 | (0.2) | 2.7 | 2.9 | 2.7 | (0.0) | 2.3 | 1.6 | 0.6 | (-1.9)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3] 연령별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증감 : 계절조정계열

(단위 : 천 명, 전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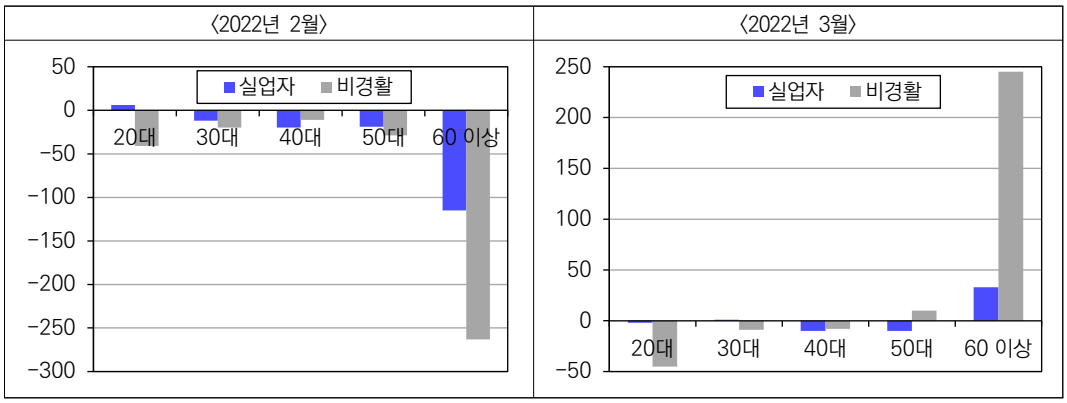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전월대비) 산업별로는 음식숙박, 공공행정이 감소함. 부동산, 도소매, 사업시설, 교육은 정체된 반면 제조업, 예술여가, 건설은 개선됨.

– 도소매, 예술여가, 음식숙박은 2020년 2월 수준 이하를 유지함.

[그림 4] 산업별 취업자 수 변화 : 계절조정계열, 2020년 2월을 100으로 정규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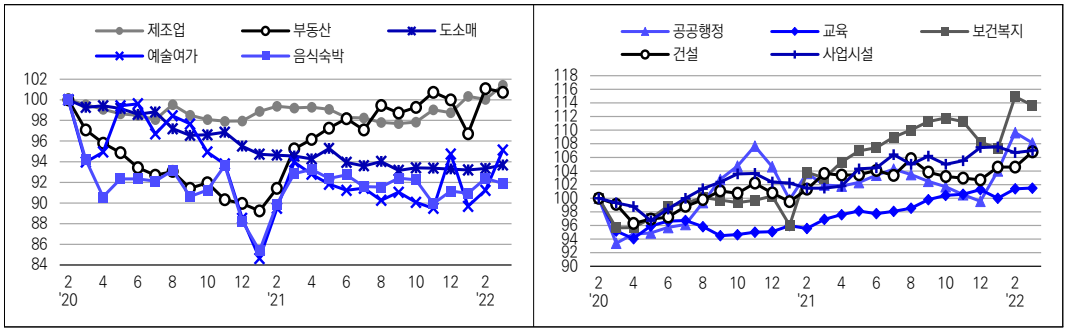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표 2〉 산업별 취업자 수 증감

(단위 : 천 명, %)

| | 전년동월대비(원계열) | | | 전월대비(계절조정계열) | | | 3개월 전 대비 (계절조정계열) | |
|---|---|---|---|---|---|---|---|---|
| | 1월 | 2월 | 3월 | 1월 | 2월 | 3월 | 증감 | 증감률 |
| 농림어업 | 88 | 49 | 35 | 56 | -1 | -95 | -40 | -2.6 |
| 광업 | 0 | -1 | 1 | 2 | 0 | -1 | 1 | 9.1 |
| 제조업 | 66 | 32 | 100 | 70 | -13 | 61 | 118 | 2.7 |
| 전기 · 가스 · 증기 | 6 | 5 | 2 | 2 | -1 | -4 | -3 | -3.9 |
| 수도 · 원료재생 | 13 | 18 | 8 | -2 | 3 | -5 | -4 | -2.3 |
| 건설업 | 100 | 65 | 64 | 38 | 0 | 45 | 83 | 4.0 |
| 도매 및 소매업 | -56 | -47 | -32 | -3 | 5 | 12 | 14 | 0.4 |
| 운수 및 창고업 | 121 | 135 | 81 | 4 | 24 | -32 | -4 | -0.2 |
| 숙박 및 음식점업 | 128 | 55 | -20 | -5 | 33 | -11 | 17 | 0.8 |
| 정보통신업 | 106 | 128 | 81 | 8 | 31 | -14 | 25 | 2.7 |
| 금융 및 보험업 | -15 | -4 | -25 | -17 | 11 | -16 | -22 | -2.8 |
| 부동산업 | 41 | 53 | 30 | -18 | 24 | -2 | 4 | 0.7 |
| 전문 · 과학 · 기술 | 115 | 105 | 72 | 6 | -4 | -13 | -11 | -0.9 |
| 사업시설관리지원 | 71 | 69 | 74 | 1 | -11 | 4 | -6 | -0.4 |
| 공공행정 · 사회보장 | 40 | 62 | 68 | 50 | 63 | -17 | 96 | 8.6 |
| 교육서비스업 | 74 | 106 | 86 | -24 | 26 | 2 | 4 | 0.2 |
| 보건 및 사회복지 | 250 | 254 | 251 | -21 | 179 | -30 | 128 | 5.0 |
| 예술 · 스포츠 · 여가 | 25 | 8 | 6 | -26 | 8 | 20 | 2 | 0.4 |
| 협회 · 단체 · 수리 · 기타 | -21 | -32 | -30 | -18 | 3 | -3 | -18 | -1.6 |
| 가구 내 고용 · 자가소비 | -15 | -19 | -17 | -4 | -4 | -1 | -9 | -10.7 |
| 국제 및 외국기관 | -1 | -2 | -1 | 1 | 0 | 1 | 2 | 14.3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종사상 지위별로 2022년 3월은 전년동월대비 임시직에서 증가폭이 크게 축소됨.

- 상용직은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공공서비스에서 증가폭이 확대되고 정보통신, 전문과학기술 등에서는 증가폭이 축소됨. 임시직은 건설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취업자 증가폭이 축소 혹은 감소로 전환되거나 감소폭이 확대됨. 일용직은 건설업과 협회단체에서 감소폭이 확대되고 도소매 및 음식숙박에서는 감소폭이 축소됨.
-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운수창고에서 증가폭이 축소되고 교육서비스에서 감소 전환됨.

〈표 3〉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수 증감

(단위 : 천 명, %)

| | 전년동월대비(원계열) | | | 전월대비(계절조정계열) | | | 3개월 전 대비 (계절조정계열) | |
|---|---|---|---|---|---|---|---|---|
| | 1월 | 2월 | 3월 | 1월 | 2월 | 3월 | 증감 | 증감률 |
| 상용직 | 686 | 767 | 811 | 129 | 114 | 134 | 377 | 2.5 |
| 임시직 | 377 | 342 | 166 | -34 | 301 | -86 | 181 | 3.9 |
| 일용직 | -60 | -149 | -172 | -41 | 0 | 30 | -11 | -0.9 |
|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 54 | 39 | 35 | -11 | -8 | -12 | -31 | -2.3 |
|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 81 | 75 | 25 | 21 | 10 | -84 | -53 | -1.3 |
| 무급가족종사자 | -4 | -38 | -33 | -10 | -3 | -17 | -30 | -3.0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표 4〉 종사상 지위별, 산업별 취업자 수 증감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 | 상용직 | | | 임시직 | | | 일용직 | | |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 | |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 | |
|---|---|---|---|---|---|---|---|---|---|---|---|---|---|---|---|
| | 1월 | 2월 | 3월 | 1월 | 2월 | 3월 | 1월 | 2월 | 3월 | 1월 | 2월 | 3월 | 1월 | 2월 | 3월 |
| 농림어업 | -2 | -3 | 0 | 8 | 7 | 4 | 0 | 6 | -9 | 7 | 10 | 9 | 66 | 35 | 31 |
| 제조업 | 58 | 51 | 92 | 10 | 10 | 11 | -4 | -22 | -4 | 12 | 4 | 12 | -18 | -16 | -9 |
| 건설업 | 82 | 88 | 110 | 26 | 16 | 30 | -20 | -60 | -82 | 12 | 13 | 10 | 6 | 9 | 2 |
| 도소매 | 33 | 42 | 70 | 5 | -11 | -37 | -28 | -28 | -15 | 10 | 8 | 0 | -41 | -27 | -19 |
| 운수창고 | 61 | 46 | 34 | -3 | 7 | 13 | -3 | 5 | -11 | -1 | 1 | 2 | 67 | 75 | 44 |
| 음식숙박 | -2 | -1 | -17 | 94 | 93 | 26 | -7 | -48 | -35 | 11 | -9 | -20 | 9 | 7 | 15 |
| 정보통신 | 101 | 124 | 79 | 9 | 10 | 10 | 5 | 3 | 1 | 3 | 2 | 1 | -12 | -11 | -9 |
| 금융보험 | -26 | -20 | -22 | 21 | 26 | 4 | -2 | -3 | -2 | -6 | -3 | 0 | -2 | -4 | -4 |
| 부동산 | 30 | 38 | 21 | 16 | 10 | 7 | -2 | 1 | -2 | -2 | 0 | 2 | -4 | 1 | -1 |
| 전문과학기술 | 118 | 112 | 96 | 3 | -1 | -20 | -4 | -5 | 0 | -4 | -5 | -5 | 6 | 7 | 3 |
| 사업관리지원 | 24 | 34 | 53 | 31 | 25 | 13 | 9 | 2 | -1 | -4 | -3 | 0 | 4 | 7 | 6 |
| 공공행정 | 21 | 41 | 72 | 17 | 19 | -1 | 3 | 2 | -3 | - | - | - | - | - | - |
| 교육서비스 | 37 | 60 | 52 | 18 | 28 | 27 | 1 | 0 | 4 | 3 | 4 | 3 | 8 | 10 | -4 |
| 보건복지 | 128 | 141 | 166 | 117 | 105 | 82 | -5 | 2 | -4 | 14 | 10 | 9 | -3 | -2 | -2 |
| 예술스포츠 | -7 | -5 | -13 | 12 | 2 | 2 | -4 | -3 | 4 | -3 | 0 | 4 | 31 | 25 | 12 |
| 협회단체 | 21 | 6 | 18 | 7 | 9 | 6 | -1 | -1 | -13 | 1 | 5 | 6 | -36 | -42 | -38 |
| 가구 내 고용 | 1 | 1 | -1 | -17 | -18 | -18 | 1 | -1 | 0 | 0 | 0 | 0 | 0 | -1 | 2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2022년 3월 평균 총근로시간은 38.7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0.6시간 감소함.

– 36~44시간 근로자 및 일시휴직자 비중은 증가하고 45시간 이상 근로자 비중은 감소함.

[그림 5] 근로시간 집단별 취업자 수 증감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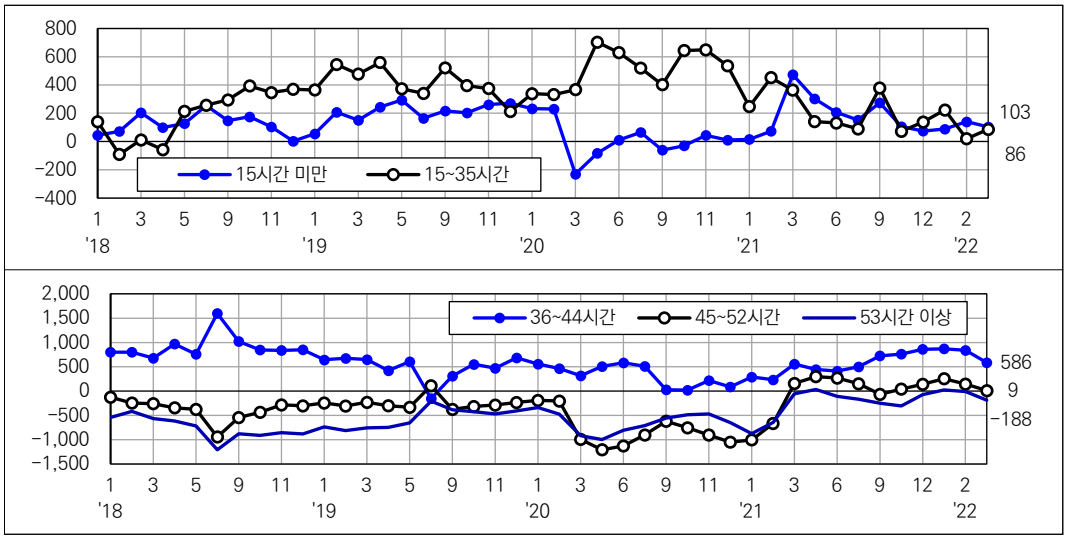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3월 비경제활동인구는 전년동월대비 -27만 7천 명으로 감소폭이 축소(2월 -41만 2천 명)됨.

– 남성은 전년동월대비 -9만 4천 명으로 재학·수강에서 감소폭이 축소됨. 여성은 -18만 3천 명으로 육아·가사 및 재학·수강에서 감소폭이 축소되고 쉬었음은 증가 전환됨.

[그림 6] 성별(남자 : 좌, 여자 : 우) 비경제활동인구 사유별 증감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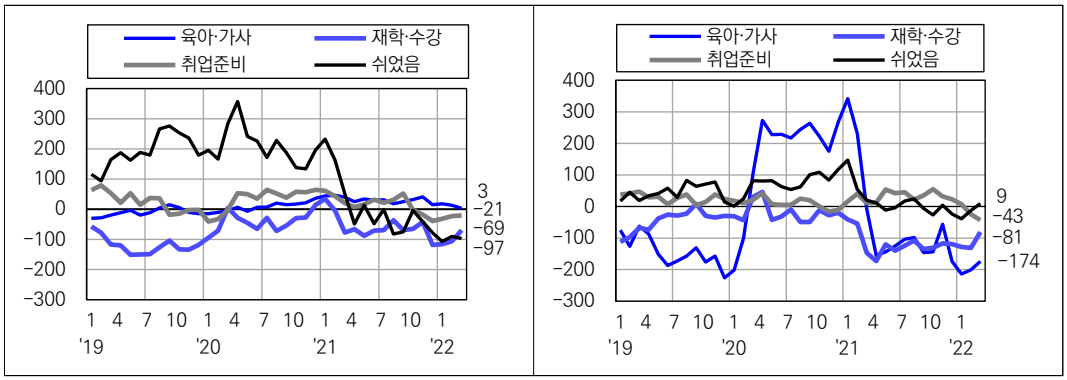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 제조업 취업자 증가폭 확대, 서비스업 취업자 증가폭 크게 축소

○ 2022년 3월 전년동월대비 제조업 취업자는 10만 명 증가하여 증가폭이 크게 확대됨.

-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증가세가 둔화되는 추세이나 사업체노동력조사 종사자는 증가폭이 확대되는 추세임. 피보험자는 전자통신, 식료품, 금속가공, 전기장비 등에서 증가함.
- 경활 계절조정계열 취업자는 증가하는 추세로 3월은 전월대비 6만 1천 명 증가함.

[그림 7] 제조업 고용 증감(좌) 및 기업경기지수(우) 증감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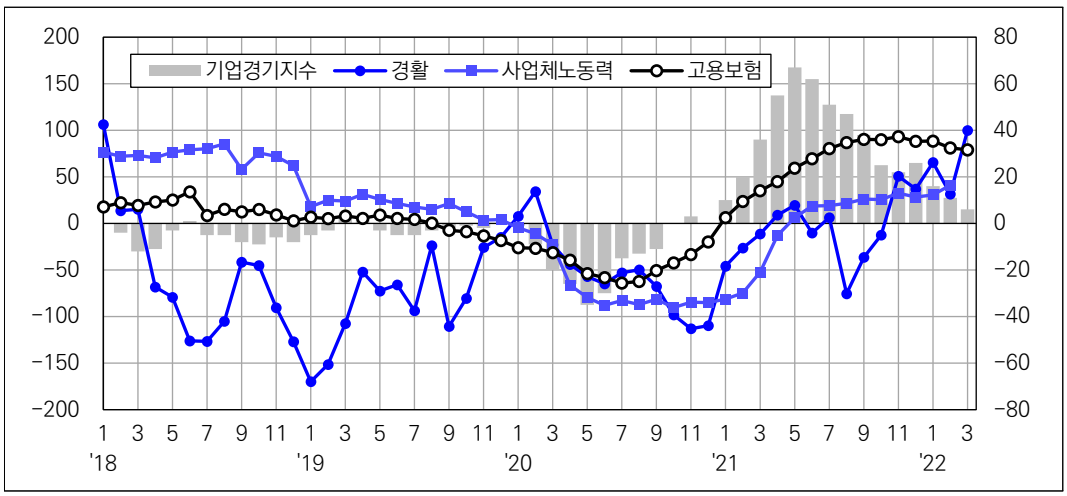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한국은행, 「기업경기조사」.

[그림 8] 계절조정 제조업 취업자 수

(단위 : 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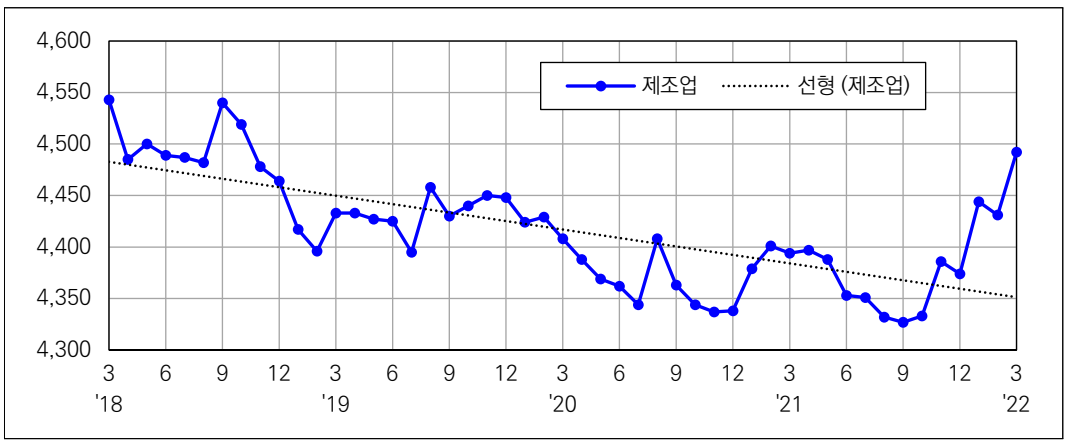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2022년 3월 건설업 전년동월대비 취업자는 6만 4천 명 증가하여 증가폭을 유지함.

–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증가세를 유지하고 사업체노동력조사 종사자는 증가 전환됨.

[그림 9] 건설업 고용 증감(좌) 및 기업경기지수(우) 증감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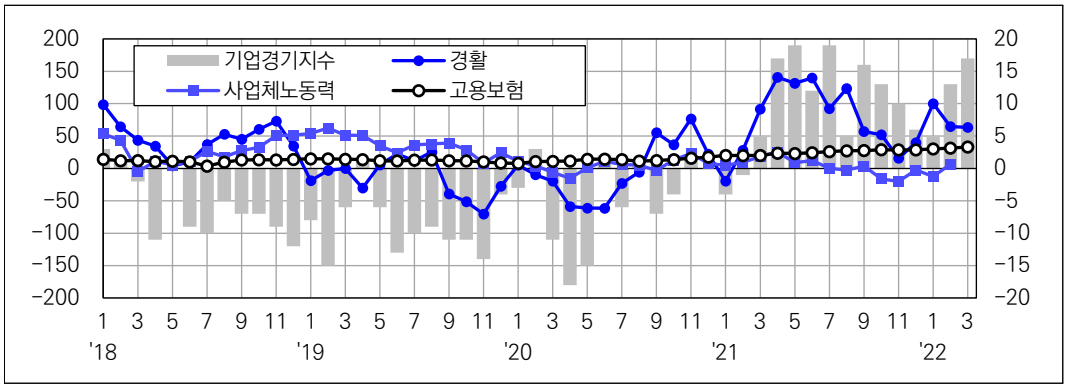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한국은행, 「기업경기조사」.

○ 2022년 3월 서비스업은 전년동월대비 63만 명 증가하여 증가폭이 크게 축소됨.

– (운수창고) 경활 취업자 증가폭이 크게 축소됨. 기업경기지수 역시 증가세가 둔화됨.

– (음식숙박) 경활 취업자 수는 감소 전환하고 그 외 고용지표는 증가폭이 축소됨.

– (정보통신) 경활 취업자 증가폭은 크게 축소되었지만 그 외 고용지표는 증가세가 이어짐.

– (전문과학기술) 경활 취업자는 2개월 연속 증가폭이 축소됨. 사업체노동력조사 종사자는 증가폭이 확대되는 추세임. 기업경기지수는 2021년 3월 수준을 유지함.

[그림 10] 운수 및 창고업 고용 증감(좌) 및 기업경기지수(우) 증감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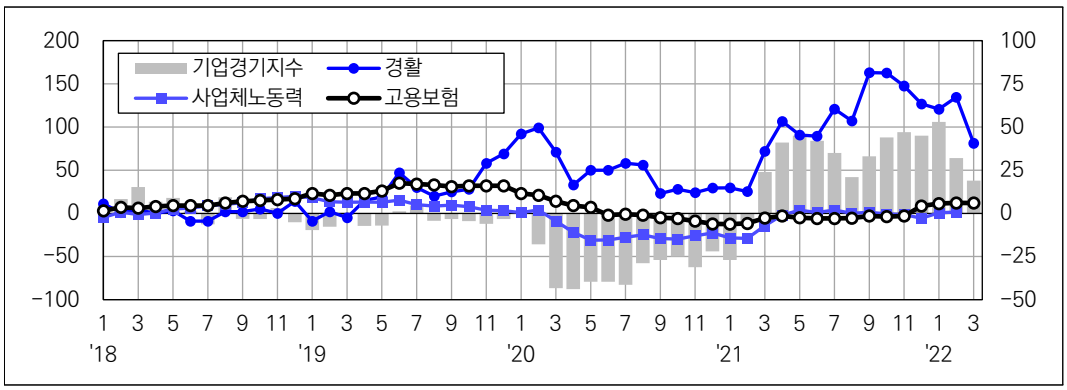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한국은행, 「기업경기조사」.

[그림 11] 숙박 및 음식점업 고용 증감(좌) 및 생산지수(우) 증감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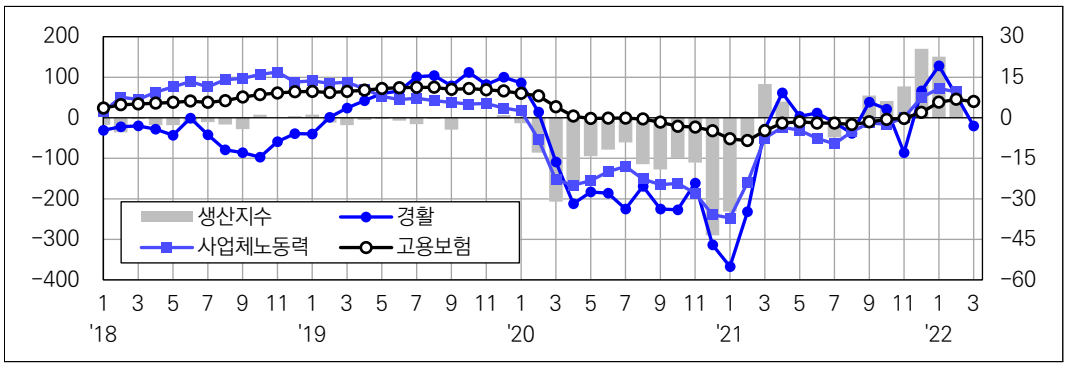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서비스업동향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그림 12] 정보통신업 고용 증감(좌) 및 기업경기지수(우) 증감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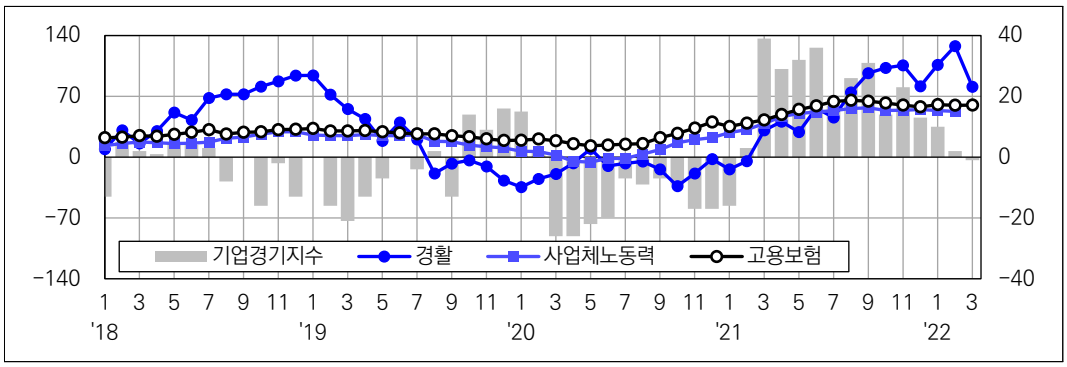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한국은행, 「기업경기조사」.

[그림 1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고용 증감(좌) 및 기업경기지수(우) 증감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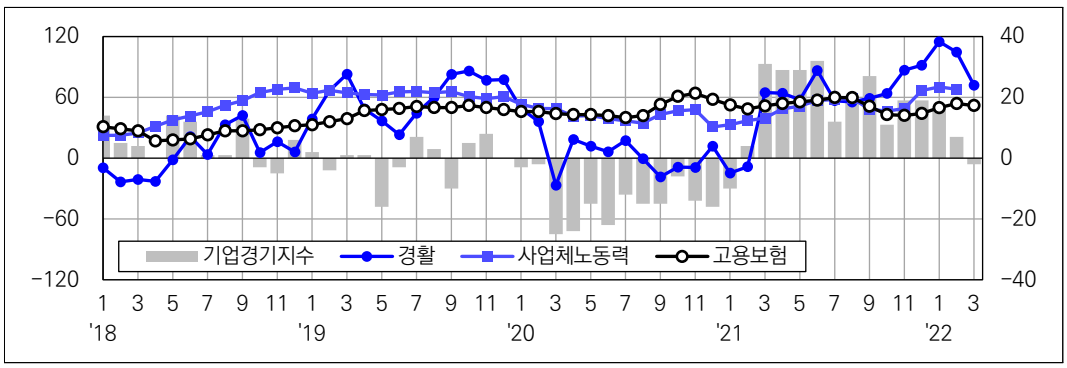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한국은행, 「기업경기조사」.

○ 2022년 3월 기간제 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41만 6천 명 증가하여 증가폭이 크게 축소됨. 기간제는 모든 연령대에서 고르게 증가폭이 축소됨. 2019년의 기간제 증가는 2019년 3월 'ILO 신종사상 지위개정을 반영하기 위한 병행조사'가 시작된 영향이 일부 반영된 것임.

[그림 14] 연령대별 기간제 근로자 증감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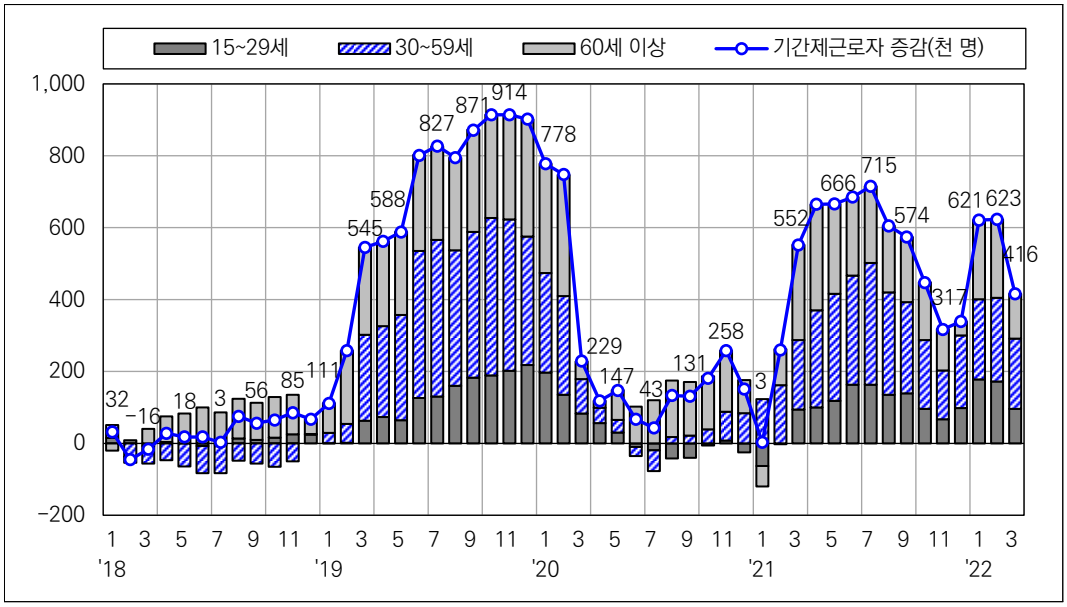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지상훈, 동향분석실 책임연구원)

# 임금 및 근로시간 동향

## ◈ 2022년 1월 명목임금은 전년동월대비 21.8% 증가

○ 2022년 1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472만 2천 원(21.8% 증가)임.

- 2022년 1월 상용근로자 임금총액은 502만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22.8% 증가, 비상용근로자 임금총액은 178만 2천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4.0% 증가함.
- 상용근로자의 임금내역별 증가율을 보면 정액급여 4.2%, 초과급여 1.9%, 특별급여 118.4%로 나타남. 특별급여의 큰 증가폭은 명절상여금 지급시기 변경,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월 감소한 기저효과, 반도체 관련 제조업, 금융 및 보험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에서 성과급 지급시기 변경 및 확대 등이 복합적으로 반영됨.
- 2021년 1월 상용근로자의 임금은 코로나19 및 최저임금 상승률 둔화로 정액급여 상승률은 둔화되었으며, 명절상여금 지급시기 변경 등으로 임금총액이 감소함.
- 비상용(임시・일용)근로자의 임금 상승폭 축소는 2021년 1월 코로나19 영향으로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낮은 산업의 비상용근로자가 전년동월대비 감소하여 임금총액이 증가한 데 따른 기저효과가 반영됨.

※ 초과급여 : 연장(야근근로 포함)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되는 급여
특별급여 : 상여금, 성과급, 임금인상소급분, 학자금 등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특별한 급여

○ 2022년 1월 소비자물가지수(2020=100.0)를 고려한 실질임금은 전년동월대비 17.5% 증가함.

〈표 1〉 임금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단위 : 천 원, %, 2020=100.0)

| |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1 1월 | 2022 1월 |
|---|---|---|---|---|---|---|---|---|
| 전체 근로자 임금총액 | | 3,207 | 3,376 | 3,490 | 3,527 | 3,689 | 3,877 | 4,722 |
| | | ( 3.3) | ( 5.3) | ( 3.4) | ( 1.1) | ( 4.6) | (-5.2) | (21.8) |
| 상용 근로자 | 임금총액 | 3,418 | 3,592 | 3,702 | 3,719 | 3,893 | 4,087 | 5,020 |
| | | ( 2.6) | ( 5.1) | ( 3.1) | ( 0.4) | ( 4.7) | (-5.8) | (22.8) |
| | 정액급여 | 2,764 | 2,891 | 3,010 | 3,077 | 3,181 | 3,217 | 3,351 |
| | | ( 3.6) | ( 4.6) | ( 4.1) | ( 2.2) | ( 3.4) | ( 2.5) | ( 4.2) |
| | 초과급여 | 190 | 197 | 202 | 200 | 208 | 197 | 201 |
| | | ( 0.6) | ( 3.7) | ( 2.7) | (-0.9) | ( 3.7) | ( 0.8) | ( 1.9) |
| | 특별급여 | 464 | 504 | 490 | 441 | 504 | 672 | 1,468 |
| | | (-2.2) | ( 8.5) | (-2.8) | (-9.9) | (14.3) | (-33.1) | (118.4) |
| 임시 · 일용근로자 임금총액 | | 1,353 | 1,428 | 1,517 | 1,636 | 1,700 | 1,714 | 1,782 |
| | | ( 5.1) | ( 5.5) | ( 6.2) | ( 7.8) | ( 3.9) | ( 5.9) | ( 4.0) |
| 소비자물가지수 | | 103.0 | 104.5 | 105.1 | 105.7 | 104.0 | 101.0 | 104.7 |
| | | ( 1.9) | ( 1.5) | ( 0.4) | ( 0.5) | ( 2.5) | ( 0.9) | ( 3.6) |
| 실질임금증가율 | | 1.3 | 3.7 | 3.0 | 0.5 | 2.0 | -6.1 | 17.5 |

주 : 1)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임.
2) (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통계청, https://kosis.kr/

[그림 1] 상용근로자의 임금 구성

(단위 : 천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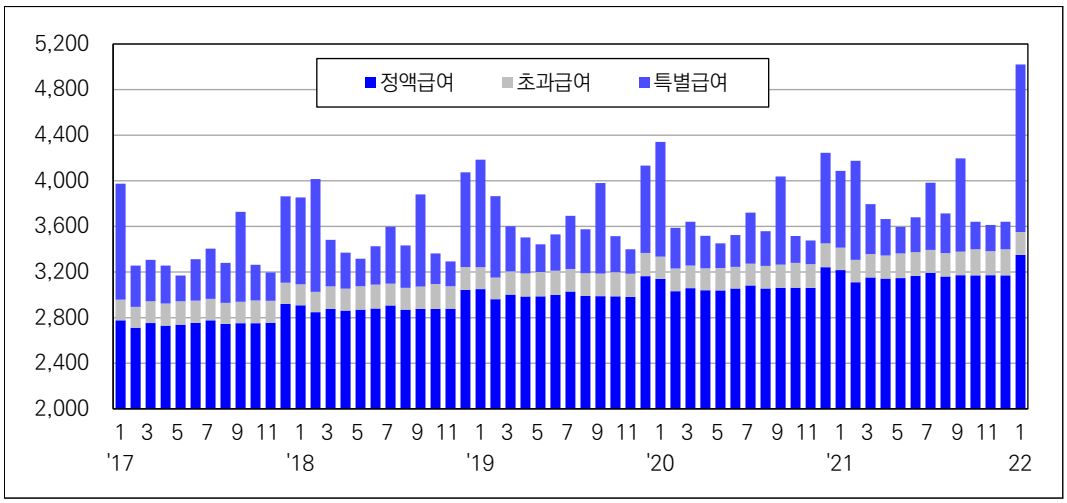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그림 2] 임시 · 일용근로자의 상대임금 비율

(단위 : %, 상용직 임금=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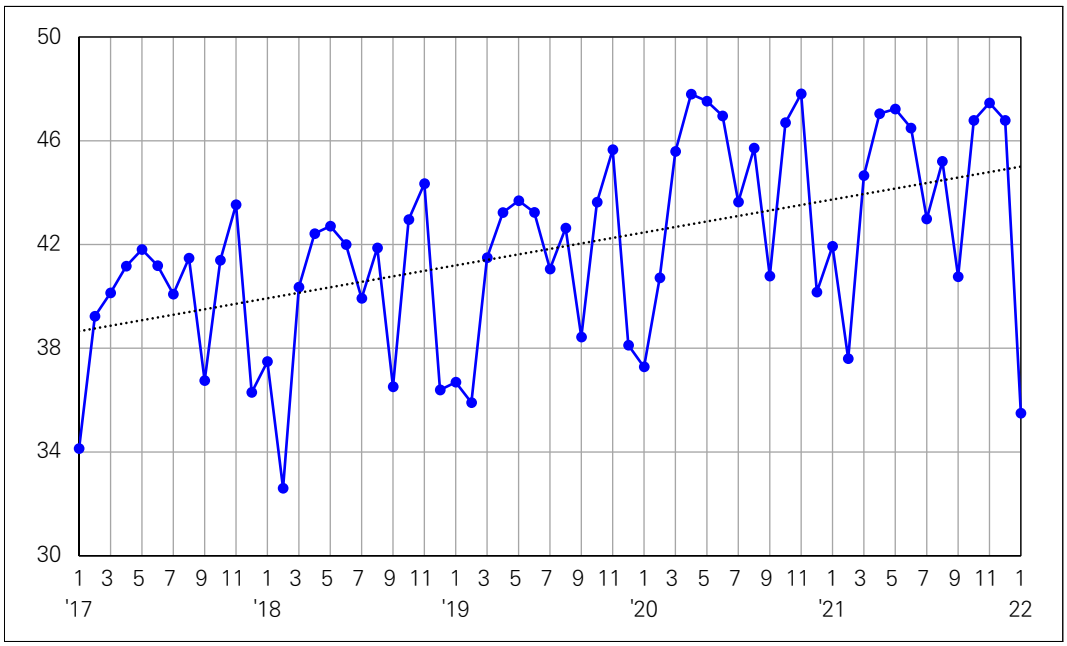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 2022년 1월 중소규모 · 대규모 사업체 임금 전년동월대비 크게 증가

○ 2022년 1월 중소규모 · 대규모 사업체 임금은 전년동월대비 각각 15.1%, 38.2% 증가함.

- 중소규모(1~299인) 사업체 · 대규모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임금은 전년동월대비 각각 16.0%, 39.0% 증가함.
- 사업체 규모별 상용직 근로자의 임금상승폭 확대는 명절상여금 지급시기,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월 임금이 감소한 기저효과 등이 반영됨. 이와 더불어 30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체에서는 금융 및 보험업,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에서는 반도체 관련 제조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등에서 성과급 지급시기 변경 및 확대 등의 영향이 반영됨.
- 중소규모 · 대규모 사업체의 비상용근로자 임금은 전년동월대비 각각 2.5%, 18.7% 증가함.

〈표 2〉 사업체 규모별 임금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단위 : 천 원, %)

| | | 2018 | 2019 | 2020 | 2021 | 2021 1월 | 2022 1월 |
|---|---|---|---|---|---|---|---|
| 중소규모 | 소 계 | 3,019( 4.6) | 3,139( 4.0) | 3,193( 1.7) | 3,316( 3.8) | 3,321( -5.1) | 3,822( 15.1) |
| | 상용임금총액 | 3,217(11.5) | 3,338( 3.7) | 3,377( 1.2) | 3,510( 3.9) | 3,503( -5.8) | 4,065( 16.0) |
| | 정액급여 | 2,723( 4.7) | 2,841( 4.3) | 2,915( 2.6) | 3,012( 3.4) | 3,030( 2.6) | 3,153( 4.1) |
| | 초과급여 | 172( 4.8) | 175( 2.0) | 171( -2.4) | 176( 2.9) | 166( -0.1) | 169( 1.6) |
| | 특별급여 | 322( 1.9) | 322(-0.2) | 292( -9.4) | 322(10.4) | 307(-48.9) | 742(141.5) |
| | 비상용임금총액 | 1,422( 5.3) | 1,505( 5.8) | 1,615( 7.3) | 1,671( 3.4) | 1,690( 6.4) | 1,733( 2.5) |
| 대규모 | 소 계 | 5,305( 6.5) | 5,356( 1.0) | 5,242( -2.1) | 5,582( 6.5) | 6,690( -7.0) | 9,248( 38.2) |
| | 상용임금총액 | 5,474( 6.4) | 5,492( 0.3) | 5,335( -2.8) | 5,687( 6.6) | 6,815( -7.2) | 9,474( 39.0) |
| | 정액급여 | 3,735( 3.8) | 3,843( 2.9) | 3,847( 0.1) | 3,973( 3.3) | 4,093( 1.2) | 4,270( 4.3) |
| | 초과급여 | 324( 0.0) | 335( 3.5) | 340( 1.4) | 357( 5.1) | 342( 1.2) | 351( 2.5) |
| | 특별급여 | 1,415(15.7) | 1,313(-7.2) | 1,149(-12.5) | 1,357(18.1) | 2,379(-19.7) | 4,853(104.0) |
| | 비상용임금총액 | 1,509( 7.8) | 1,712(13.4) | 2,029( 18.5) | 2,214( 9.1) | 2,159( -0.1) | 2,563( 18.7) |

주 : 1)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임.
2) (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그림 3] 사업체 규모별 상용근로자 정액급여 증가율(좌, 누계)과 비상용 임금총액 증가율(우, 누계) 추이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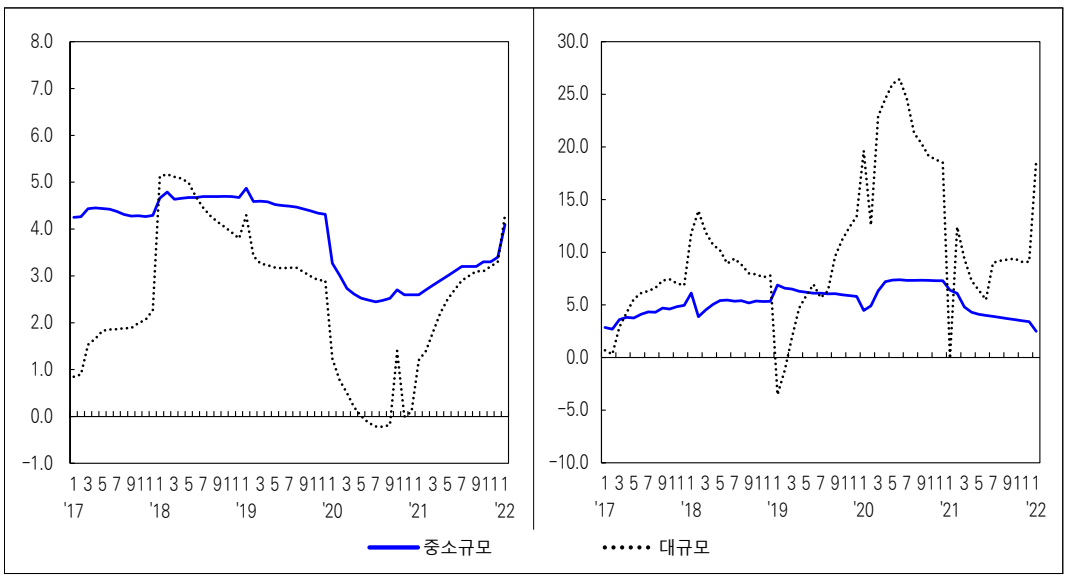


주 : 1인 기준 상용근로자의 정액급여와 비상용 임금총액의 월별 누계값 기준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 2022년 1월 산업별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모든 산업에서 증가

○ 2022년 1월 임금총액이 가장 많은 산업은 금융 및 보험업(1,045만 7천 원, 35.7%)으로 가장 큰 임금상승률을 기록하였으며, 다음으로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646만 3천 원, 13.8%), 제조업(640만 1천 원, 32.0%) 순으로 나타남.

○ 2022년 1월 임금총액이 가장 낮은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205만 원, 7.1%)으로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임.

○ 2022년 1월 평균임금상승률은 21.8%였으며, 금융 및 보험업(35.7%), 제조업(32.0%), 정보통신업(28.2%),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24.1%) 이외 모든 산업은 평균임금상승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3〉 산업별 임금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제10차 표준산업분류)

(단위 : 천 원, %)

| | 2018 | 2019 | 2020 | 2021 | 2021 | 2022 |
|---|---|---|---|---|---|---|
| | | | | | 1월 | 1월 |
| 전 산 업 | 3,376( 5.3) | 3,490( 3.4) | 3,527 | 3,689( 4.6) | 3,877( -5.2) | 4,722(21.8) |
| 광업 | 3,835( 3.3) | 3,977( 3.7) | 4,325 | 4,415( 2.1) | 4,590( -2.3) | 5,180(12.8) |
| 제조업 | 3,930( 6.5) | 4,017( 2.2) | 3,990 | 4,239( 6.2) | 4,851( -4.8) | 6,401(32.0) |
| 전기 · 가스 ·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6,436( 2.5) | 6,502( 1.0) | 6,733 | 6,753( 0.3) | 5,682( -4.1) | 6,463(13.8) |
| 수도 · 하수 · 폐기물처리 및 원료재생업 | 3,288( 6.5) | 3,506( 6.6) | 3,888 | 4,094( 5.3) | 3,957( -4.2) | 4,426(11.9) |
| 건설업 | 2,784( 6.1) | 2,951( 6.0) | 3,032 | 3,106( 2.4) | 3,150( -5.3) | 3,546(12.6) |
| 도매 및 소매업 | 3,214( 5.4) | 3,372( 4.9) | 3,423 | 3,551( 3.7) | 3,610( -7.5) | 4,176(15.7) |
| 운수 및 창고업 | 3,357( 6.4) | 3,476( 3.5) | 3,530 | 3,795( 7.5) | 3,861( -1.2) | 4,362(13.0) |
| 숙박 및 음식점업 | 1,757( 8.1) | 1,875( 6.7) | 1,879 | 1,905( 1.4) | 1,914( -5.4) | 2,050( 7.1) |
| 정보통신업 | 4,277( 3.8) | 4,463( 4.3) | 4,613 | 4,796( 4.0) | 4,968( -3.6) | 6,367(28.2) |
| 금융 및 보험업 | 6,026( 5.6) | 6,236( 3.5) | 6,526 | 6,963( 6.7) | 7,705( -4.5) | 10,457(35.7) |
| 부동산업 | 2,600( 6.3) | 2,755( 6.0) | 2,848 | 2,954( 3.7) | 2,905( -6.0) | 3,311(14.0) |
| 전문 ·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4,757( 5.9) | 4,901( 3.0) | 4,871 | 5,106( 4.8) | 5,010( -9.9) | 6,216(24.1) |
| 사업시설관리 및 임대서비스업 | 2,203( 5.5) | 2,332( 5.9) | 2,411 | 2,492( 3.4) | 2,487( -2.1) | 2,780(11.8) |
| 교육서비스업 | 3,397( 2.5) | 3,474( 2.3) | 3,366 | 3,355(-0.3) | 3,569(-12.9) | 4,111(15.2) |
|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2,799( 4.8) | 2,960( 5.8) | 2,942 | 3,014( 2.5) | 3,001( -5.9) | 3,343(11.4) |
| 여가 관련 서비스업 | 2,684( 6.8) | 2,819( 5.0) | 2,873 | 2,994( 4.2) | 2,986( -5.9) | 3,426(14.7) |
| 협회 · 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 2,401( 7.2) | 2,517( 4.8) | 2,563 | 2,700( 5.4) | 2,713( -1.6) | 3,115(14.8) |

주 : 1)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임.
2) 2020년 1월부터 제10차 표준산업분류를 반영하여 산업별 임금총액을 공표함에 따라 2020년 이전 자료와의 산업별 비교에 유의해야 함. 2018~19년 자료는 제9차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것임.
3) (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 2022년 1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156.7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0.6시간 감소(월력상 근로일수는 전년동월대비 동일)

○ 2022년 1월 상용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162.4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0.4시간 감소함.

- 상용근로자는 월력상 근로일수 증감에 영향을 크게 받는 편이나, 월력상 근로일수가 동일함에도 초과근로시간 감소 등으로 근로시간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2022년 1월 비상용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00.7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0.4시간 증가함.

- 비상용근로자의 근로시간 증가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에서 코로나19 방역 대응 등으로 근로시간이 증가한 영향임.

○ 중소규모·대규모 사업체 월평균 근로시간은 각각 156.3시간, 158.9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감소함.

-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의 근로시간 감소는 제조업 등에서 근로시간이 감소한 데 기인함.

[그림 4] 사업체 규모별 상용직 일일 평균 근로시간(좌, 누계)과 비상용 일일 평균 근로시간(우, 누계) 추이

(단위 : 시간/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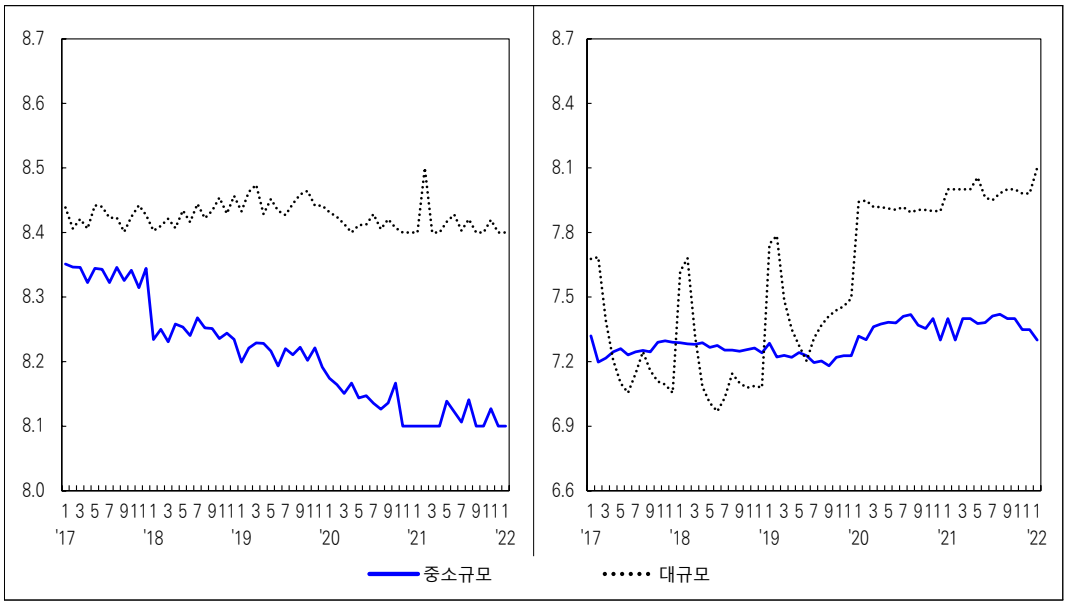


주 : 일일 평균 근로시간은 상용직, 비상용직 사업체 규모별 전체 근로시간을 상용직, 비상용직 사업체 규모별 전체 근로일수로 나눈 것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표 4〉 사업체 규모별 근로시간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단위 : 시간, %)

| | | 2018 | 2019 | 2020 | 2021 | 2021 | 2022 |
|---|---|---|---|---|---|---|---|
| | | | | | | 1월 | 1월 |
| 중소규모 | 전체 근로시간 | 164.1 (-1.5) | 163.0 (-0.7) | 160.1 (-1.8) | 160.3 ( 0.1) | 156.7 (-0.4) | 156.3 (-0.3) |
| | 상용 총근로시간 | 172.1 (-1.3) | 171.2 (-0.5) | 167.6 (-2.1) | 167.8 ( 0.1) | 163.2 (-0.7) | 162.9 (-0.2) |
| | 상용 소정실근로시간 | 163 (-1.0) | 162.6 (-0.2) | 159.8 (-1.7) | 160.1 ( 0.2) | 155.6 (-0.7) | 155.7 ( 0.1) |
| | 상용 초과근로시간 | 9.1 (-6.2) | 8.6 (-5.5) | 7.8 (-9.3) | 7.7 (-1.3) | 7.5 (-1.3) | 7.2 (-4.0) |
| | 비상용 근로시간 | 99.2 (-6.1) | 95.4 (-3.8) | 96.1 ( 0.7) | 97.4 ( 1.4) | 98.5 ( 2.0) | 99.0 ( 0.5) |
| 대규모 | 전체 근로시간 | 163.3 (-0.7) | 164.1 ( 0.5) | 162.8 (-0.8) | 162.3 (-0.3) | 160.3 ( 0.8) | 158.9 (-0.9) |
| | 상용 총근로시간 | 166.6 (-0.7) | 166.3 (-0.2) | 163.9 (-1.4) | 163.4 (-0.3) | 161.0 ( 0.5) | 160.0 (-0.6) |
| | 상용 소정실근로시간 | 154.9 (-0.3) | 154.9 ( 0.0) | 153.0 (-1.2) | 152.3 (-0.5) | 150.0 ( 0.7) | 149.4 (-0.4) |
| | 상용 초과근로시간 | 11.7 (-4.9) | 11.4 (-2.6) | 10.9 (-4.4) | 11.1 ( 1.8) | 11.0 (-1.8) | 10.5 (-4.5) |
| | 비상용 근로시간 | 89.2 (-1.2) | 104.9 (17.6) | 125.2 (19.4) | 127.9 ( 2.2) | 133.6 ( 7.8) | 128.0 (-4.2) |

주 : (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 2022년 1월 월평균 근로시간은 산업별 증감 차이를 보임

○ 2022년 1월 월평균 근로시간이 가장 긴 산업은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172.9시간)이며, 다음으로 광업(171.0시간), 제조업(169.1시간) 순임.

– 근로시간이 짧은 산업은 교육서비스업(131.9시간), 건설업(135.3시간)임.

○ 2022년 1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이 가장 크게 증가한 산업은 여가관련 서비스업(7.1%)이며, 가장 크게 감소한 산업은 광업(-4.9%)으로 나타남.

〈표 5〉 산업별 근로시간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단위 : 시간, %)

| | 2018 | 2019 | 2020 | 2021 | 2021 | 2022 |
|---|---|---|---|---|---|---|
| | | | | | 1월 | 1월 |
| 전 산 업 | 163.9 (-1.4) | 163.1 (-0.5) | 160.6 | 160.7 ( 0.1) | 157.3 (-0.2) | 156.7 (-0.4) |
| 광업 | 176.6 ( 0.5) | 175.7 (-0.5) | 181.2 | 179.9 (-0.7) | 179.8 ( 6.0) | 171.0 (-4.9) |
| 제조업 | 177.1 (-1.5) | 175.9 (-0.7) | 172.7 | 173.5 ( 0.5) | 170.8 ( 1.5) | 169.1 (-1.0) |
| 전기 · 가스 ·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162.1 (-1.7) | 160.4 (-1.0) | 163.7 | 161.6 (-1.3) | 165.0 ( 2.0) | 165.8 ( 0.5) |
| 수도 · 하수 · 폐기물처리 및 원료재생업 | 177.8 ( 0.4) | 178.6 ( 0.4) | 176.5 | 176.9 ( 0.2) | 175.1 ( 3.5) | 172.9 (-1.3) |
| 건설업 | 138.5 (-2.4) | 136.3 (-1.6) | 136.9 | 135.9 (-0.7) | 135.5 (-0.8) | 135.3 (-0.1) |
| 도매 및 소매업 | 165.2 (-1.4) | 165.5 ( 0.2) | 163.8 | 163.8 ( 0.0) | 160.5 ( 0.2) | 159.9 (-0.4) |
| 운수 및 창고업 | 166.5 (-1.6) | 164.3 (-1.3) | 159.0 | 160.2 ( 0.8) | 155.8 (-2.5) | 158.2 ( 1.5) |
| 숙박 및 음식점업 | 159.7 (-0.4) | 158.6 (-0.7) | 149.7 | 148.4 (-0.9) | 144.2 (-5.4) | 144.0 (-0.1) |
| 정보통신업 | 161.6 ( 0.4) | 163.9 ( 1.4) | 163.8 | 164.1 ( 0.2) | 160.0 ( 0.5) | 160.1 ( 0.1) |
| 금융 및 보험업 | 160.9 ( 0.2) | 161.5 ( 0.4) | 162.1 | 161.9 (-0.1) | 158.5 ( 0.4) | 156.5 (-1.3) |
| 부동산업 | 178.9 (-3.2) | 176.4 (-1.4) | 173.2 | 171.8 (-0.8) | 169.4 (-0.1) | 166.3 (-1.8) |
| 전문 ·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160.4 ( 0.2) | 161.4 ( 0.6) | 161.7 | 161.6 (-0.1) | 158.1 ( 1.0) | 158.3 ( 0.1) |
| 사업시설관리 및 임대서비스업 | 163.2 (-1.2) | 162.7 (-0.3) | 161.7 | 162.1 ( 0.2) | 158.3 (-0.9) | 158.6 ( 0.2) |
| 교육서비스업 | 142.3 (-1.5) | 142.1 (-0.1) | 136.6 | 137.2 ( 0.4) | 130.1 (-0.4) | 131.9 ( 1.4) |
|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162.5 (-1.2) | 162.2 (-0.2) | 158.6 | 158.3 (-0.2) | 153.6 (-1.5) | 152.4 (-0.8) |
| 여가 관련 서비스업 | 157.7 (-1.1) | 156.1 (-1.0) | 149.7 | 152.7 ( 2.0) | 137.4 (-8.8) | 147.1 ( 7.1) |
| 협회 · 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 162.0 (-1.3) | 159.9 (-1.3) | 160.3 | 162.4 ( 1.3) | 159.6 ( 3.4) | 159.5 (-0.1) |

주 : 1) 임금근로자 근로시간임.
2) 2020년 1월부터 제10차 표준산업분류를 반영하여 산업별 근로시간을 공표함에 따라 2020년 이전 자료와의 산업별 비교에 유의해야 함. 2018~19년 자료는 제9차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것임.
3) (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김복순, 동향분석실 전문위원)

# 노사관계 및 노동정책 동향

## ◈ 노동쟁의 조정사건과 조정성립률

○ 2022년 3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노동쟁의 관련 조정사건 건수는 8건
  – 3월 노동쟁의 조정사건 접수 건수는 전년 동월 건수(5건)보다 3건 많은 수치임.

○ 2022년 3월 조정성립률 37.5%
  – 3월 조정성립률은 전년 동월 성립률 0%에 비해 37.5%포인트 높은 수치임.

〈표 1〉 2021년, 2022년 3월 조정사건 접수 및 처리 내역별 현황

| | 접수 건수 | 처리 건수 | 조정성립 | | | 조정불성립 | | | 행정 지도 | 취하 철회 | 진행 중 | 조정 성립률 |
|---|---|---|---|---|---|---|---|---|---|---|---|---|
| | | | 소계 A | 조정안 수락 | 합의 취하 | 소계 B | 조정안 거부 | 조정 중지 | | | | |
| 2022. 3 | 8 | 11 | 3 | 0 | 3 | 5 | 2 | 3 | 1 | 2 | 3 | 37.5 |
| 2021. 3 | 5 | 2 | 0 | 0 | 0 | 0 | 0 | 0 | 0 | 2 | 3 | 0 |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 ◈ 중재사건

○ 2022년 3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노동쟁의 관련 중재사건 건수는 2건
  – 3월 중재사건 접수 건수는 전년 동월 건수(0건)보다 2건 많은 수치임.
  – 진행 중인 사건을 제외하고 중재재정, 행정지도, 취하철회 건수는 0건임.

〈표 2〉 2021년, 2022년 3월 중재사건 접수 및 처리 내역별 현황

| | 접수 건수 | 처리 건수 | | | | 진행 중 |
|---|---|---|---|---|---|---|
| | | 소계 | 중재재정 | 행정지도 | 취하철회 | |
| 2022. 3. | 2 | 0 | 0 | 0 | 0 | 2 |
| 2021. 3. | 0 | 0 | 0 | 0 | 0 | 2 |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 ◈ 심판사건

○ 2022년 3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심판사건 건수는 139건

- 3월 심판사건 접수 건수는 전년 동월(183건)보다 44건 적은 수치임.
- 진행 중인 사건을 제외하고 전부 및 일부 인정 비율이 24.5%(45건), 기각·각하·취하·화해 비율이 75.5%(139건)를 차지함.

〈표 3〉 2021년, 2022년 3월 심판사건 접수 및 처리 내역별 현황

| | 접수 건수 | 처리 내역 | | | | | | | 진행 중 |
|---|---|---|---|---|---|---|---|---|---|
| | | 계 | 전부 인정 | 일부 인정 | 기각 | 각하 | 취하 | 화해 | |
| 2022. 3. | 139 | 184 | 37 | 8 | 95 | 2 | 22 | 20 | 443 |
| 2021. 3. | 183 | 235 | 54 | 9 | 101 | 18 | 27 | 26 | 514 |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 ◈ 복수노조사건

○ 2022년 3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복수노조사건 건수는 6건

- 3월 복수노조사건[1] 접수 건수는 전년 동월(7건)보다 1건 적은 수치임.
- 전부 및 일부 인정 비율이 66.7%(4건), 기각·각하·취하·화해 비율이 33.3%(2건)를 차지함.

〈표 4〉 2021년, 2022년 3월 복수노조사건 접수 및 처리 내역별 현황

| | 접수 건수 | 처리 내역 | | | | | | | 진행 중 |
|---|---|---|---|---|---|---|---|---|---|
| | | 계 | 전부 인정 | 일부 인정 | 기각 | 각하 | 취하 | 화해 | |
| 2022. 3 | 6 | 6 | 4 | 0 | 2 | 0 | 0 | 0 | 8 |
| 2021. 3 | 7 | 4 | 0 | 0 | 3 | 1 | 0 | 0 | 7 |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 2022년 2월 중앙노동위원회[2]에 접수된 총 복수노조사건 건수는 158건

- 2월 복수노조사건 접수 건수는 전년 동월(141건)보다 17건 많은 수치임.
- 2월 복수노조사건 처리 건수(교섭요구 공고, 교섭대표 결정, 교섭단위 분리, 공정대표 의무)는 전년 동월(72건)보다 13건 많은 수치임.

1) 복수노조사건은 교섭요구, 교섭대표, 교섭단위, 공정대표 사건 등 복수노조제도와 관련된 사건 일체를 말함.
2) 〈표 5〉의 접수건수는 이월사건이 포함된 건수임.

〈표 5〉 2021년, 2022년 2월 복수노조 관련 사건 처리 현황

| | 접수 건수 | 처리 내역 | | | | |
|---|---|---|---|---|---|---|
| | | 계 | 교섭요구 공고 | 교섭대표 결정 | 교섭단위 분리 | 공정대표 의무 |
| 2021 | 787 | 724 | 158 | 247 | 106 | 213 |
| 2022. 2 | 158 | 85 | 23 | 24 | 11 | 27 |
| 2021. 2 | 141 | 72 | 20 | 16 | 15 | 21 |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매월 『노동위원회 소식지』.

## ◈ '광주 아파트 붕괴' 현산 8억 원 과태료

- 3월 16일 고용노동부는 HDC현대산업개발 최고 경영자가 현장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원점에서 마련할 수 있도록 감독결과를 본사에 통보했음.
- 이번 감독에서 모두 636건의 안전조치 위반사항을 적발해 306건은 사법 조치하고 330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음.
- 감독 결과에 따라 12개 현장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모두 입건해 수사하고 있음.
- 위반사항 중에는 떨어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난간이나 작업발판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어긴 사례가 261건으로 가장 많았음. 이어 위험성 평가와 산재 보고, 화학물질관리 등 기초적인 안전 의무를 위반한 사항이 144건, 근로자 직무 교육, 화학물질교육 등 관리시스템 위반 사항이 135건 적발됐음.
- 대형 붕괴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공사장 내 거푸집과 지반 굴착 관련 안전·위험 방지조치를 위반한 사항이 19건,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가 공사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사례가 10건 적발됐음.

## ◈ 최근 5년간 공무원 순직자 3명 중 1명 '과로사'

- 3월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공무원 재해 현황 분석결과를 발표했음.
- 분석에 따르면 2017~2021년 5년간 공무상 사망자는 총 341명이고, 이 중 113명(33.1%)이 과로사로 인정받았음.
- 과로사는 공무원 사망 원인 중 뇌혈관질환과 심혈관질환으로 분류된 것을 합친 수치임. 특히 2019년에는 65명 중 31명이(47.7%), 2021년에는 62명 중 30명(48.4%)이 과로사해 절반에 육박했음.
- 공무원 순직 중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는 5년간 35명(10.3%)이었음. 2017년에는 7명으로

전체 사망자(73명)의 9.6%를 차지했지만 2021년에는 전체 사망자 62명 중 10명(16.1%)으로 규모와 비중 모두 늘었음.

- 2020년 산재보험에서 1만 명당 0.03명이 극단적 선택에 따른 산재였는데, 공무원은 1만 명당 0.06명으로 두 배나 되었음. 사망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정신질환 공무상 요양도 2019년 178명, 2020년 153명, 2021년 167명으로 적지 않은 규모를 보였음.

〈표 6〉 공무원 순직과 과로사 · 자살순직 현황

| | 순직 | 과로사 | 비율 | 자살 | 비율 |
|---|---|---|---|---|---|
| 2017 | 73 | 21 | 28.8% | 7 | 9.6% |
| 2018 | 76 | 13 | 17.1% | 7 | 9.2% |
| 2019 | 65 | 31 | 47.7% | 4 | 6.2% |
| 2020 | 65 | 18 | 27.7% | 7 | 10.8% |
| 2021 | 65 | 30 | 48.4% | 10 | 16.1% |
| 합 계 | 344 | 113 | 33.1% | 35 | 10.3% |

자료 : 용혜인 의원실.

## ◈ 고용노동부, 5년간 산재사망 낸 기업 650곳 기획감독

- 3월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산재 사망 사고의 75%는 최근 5년간 중대재해가 이미 발생했던 기업에서 반복해 사고가 난 사례였다고 하였음.
- 이에 최근 5년간 산재 사망 사고가 1건 이상 발생한 기업 650개를 대상으로 3월 10일부터 25일까지 안전 조치와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작동하는지를 기업 본사 중심으로 자체 점검하고 개선하도록 했음.
- 노동부는 자체 점검이 잘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직접 기획감독에 착수했음. 현장별로 최소 3일 이상, 감독관 3명과 산업안전보건공단 직원 3명 이상이 투입돼 감독을 진행했음.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전반적으로 확인하면서, 기업 본사의 자체 점검과 개선에 미흡한 점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조사했음.
- 중대재해법 시행 두 달인 3월 26일까지 이 법의 적용대상인 50인 이상 사업장 또는 50억 원 이상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 사고는 총 30건, 사망자 수는 36명(30일 집계 기준)임. 2021년 같은 기간(46건, 47명)보다 다소 줄었음.

### ◈ 대전시,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47개 기업 · 206명 지원

- 3월 15일 대전시에 따르면,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공모에 총 54개 기업 278명이 신청했으며,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47개 기업, 206명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음.
- 지원내용은 최저임금 수준의 참여근로자 인건비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 보험료(10.073%)의 일부로, 예비 · 인증에 따라 지원 비율은 최소 40%에서 최대 80%를 적용함.
- 지원기간은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최대 2년, (인증)사회적기업은 최대 3년임. 계속 지원 여부는 매년 재심사를 거쳐 결정하게 됨.
- 기업 형태별로 살펴보면 예비사회적기업에서 일반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50%를 지원하고, 취약계층을 고용하면 20%를 가산함. 또, 인증사회적기업에서 일반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40%를 지원하고 취약계층을 고용하면 20%를 가산하며, 계속 고용 시 추가 20%를 가산 지원함.
- 시는 오는 18일까지 업무약정(자치구↔기업)을 체결하고 기업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빠른 지원에 나설 계획이며, 하반기(7월 예정)에도 상반기와 비슷한 규모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공모를 계획하고 있음.

### ◈ 코로나 가족돌봄휴가자 '최대 50만 원' 지원

- 3월 20일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가족돌봄휴가를 쓰는 노동자에게 정부가 최대 5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음. 긴급지원은 가족돌봄휴가가 무급인 점을 고려해 노동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로 시행하는 것임.
- 지원 대상은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거나, 코로나19로 인한 휴원 · 휴교 · 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또는 만 8세 이하 · 장애인 자녀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보살피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노동자임.
- 1일에 5만 원, 최대 10일간 지원하게 됨. 노동부는 올해 1월 1일 이후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노동자에 대해서도 지원할 방침임.
- 정부는 2020년과 지난해에도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을 한시적으로 운영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올해도 추가경정예산(95억 원)을 반영해 시행하게 됐음.
- 노동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노동자 16만 6,000명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고 정부가 돌봄비용 620억 원을 지원해 노동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했음.

## ◈ 서울시, 특고 · 프리랜서 50만 원 추가 지원

- 3월 24일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고용 노동자와 프리랜서 18만 5천 명에게 긴급생계비 50만 원을 현금으로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음.
- 소득감소 규모 등 별도의 심사 없이 이달 현재 고용노동부가 지급 중인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령 증빙만 하면 거주요건 등 기본정보 확인 후 일주일 내 지급함. 노동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이외에 추가로 긴급생계비를 더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임.
- 지원 대상은 공고일인 이날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이고, 올해 노동부가 지급 중인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령을 완료한 특수고용직 · 프리랜서임.
- 다만 고용 · 소득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거나 코로나19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보험설계사 · 택배기사 등 9개 직종은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음. 노동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기준과 같음.
-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택시 · 버스 운수종사자 한시고용안정자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음.

## ◈ 외국인 근로자 13만 명 체류 · 취업 연장

- 3월 28일 고용노동부는 올 4월 13일부터 12월 31일 중 국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해 일괄 기간 연장 처리한다고 밝혔음.
- 해당되는 외국인은 비전문취업(E-9)과 방문취업(H-2) 비자를 받고 들어온 이들임. 이들은 보통 3년 또는 4년 10개월 동안 체류하게 돼 있음. 만료가 4~12월 사이인 외국인 근로자는 만료일로부터 1년 연장됨.
- 이미 1년 연장 조치를 받았을 경우 추가 연장 기간은 50일임. 단, 50일 연장 조치로 체류기간이 6년을 넘기게 되는 사람은 제외됨.
- 정부 일괄 연장 방식이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는 기간 연장 신청 등 개별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됨. 반면 사업주는 근로계약 기간 연장, 이에 따른 고용허가 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 함.
-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로도 신청할 수 있음. H-2 비자 근로자라면 사업주는 반드시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고 근로개시신고를 해야 함.
- 이번 연장 조치로 국내에 더 머무르게 되는 외국인 근로자 규모는 13만 2,000여 명(E-9 7만 7,094명 · H-2 5만 5,519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 ◈ 근로감독관 1명이 사업장 2,896곳 담당

- 3월 20일 고용노동부의 '전국 근로감독관 현황'을 보면, 지난 1월 말 기준 전국 산업안전보건분야 근로감독관(산업안전근로감독관)은 741명으로 1인당 2,896.3곳의 사업장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노동자 수로 치면 1인당 2만 5,295.1명을 맡는 셈임. 근로기준분야 근로감독관(근로기준근로감독관)은 1,963명으로 1인당 사업장 1,093.3곳, 노동자 9,548.5명을 담당함.
- 근로감독관의 과로는 전부터 지적돼 왔음. 2016년 한국노동연구원의 당시 전체 근로감독관 97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수조사 자료를 보면, 응답자의 46.6%가 '인력이 부족해 어려움이 많다'고 답했고 36.4%는 '시급히 인력충원이 필요하다'고 했음.
- 근로감독관 1인당 월평균 45.4건의 신고사건을 담당하며 주당 13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했음. 2016년 7월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서는 12주간 주당 52시간 일한 근로감독관이 과로로 숨진 일도 있었음.
- 노동부 자료를 보면 근로감독관(현원 기준)은 2017년 1,687명에서 2021년 2,742명으로 증가했음. 이 중 산업안전근로감독관은 409명에서 741명으로 증원됐음.
- 하지만 산재를 당한 노동자 역시 2017년 8만 9,848명(재해율 0.48%)에서 2021년 12만 2,713명(재해율 0.63%)으로 느는 등 산업안전 감독 수요도 늘어나는 추세임.

### ◈ 돌봄노동자 폭언 · 성희롱 피해 예방 위해 녹음기 보급

- 4월 4일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돌봄서비스 과정 중에 이용자의 반말 · 욕설 · 성희롱 등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속 전문서비스직(요양보호사 · 장애인활동지원사) 근로자에게 녹음장비를 보급한다"고 밝혔음.
- 녹음기는 직원들이 항상 패용하는 사원증 케이스 형태로 돼 있음. 움직임이 많은 업무 중에도 언제 어디서든 버튼만 누르면 녹음이 가능하도록 설계돼 있음.
- 4월부터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소속 종합재가센터 네 곳(성동 · 은평 · 강서 · 노원)의 요양보호사와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녹음기를 제공하고 시범운영함.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 보완해 전체 12개 소속기관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임.

### ◈ 코로나19 확진된 저임금 노동자 10명 중 6명은 '무급휴가'

- 4월 10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와 공공상생연대기금은, 지난달 24일부터 31일까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진행한 '코로나19와 직장생활 변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음.

- 코로나19 확진 경험이 있는 응답자 430명 중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는 28.4%, 재택근무를 한 경우는 23.3%, 무급휴가 처리된 경우는 25.8%였음. 확진으로 인한 불이익은 저임금, 비정규직, 중·소기업 노동자들에게 집중됐음.
- 격리 기간에 월 소득 500만 원 이상의 고임금 노동자는 3.3%만 무급휴가로 처리됐지만, 월 소득 150만 원 미만의 저임금 노동자는 60%가 무급휴가 처리됐음.
- 비정규직(42.1%)의 무급처리 비율이 정규직(16.2%)보다 높았음. 5인 미만 기업 종사자의 40.3%, 공공기관·대기업의 경우 각각 13.6%, 14.0%가 격리 기간 급여를 받지 못했음.
- 코로나19 대유행 와중에 백신 접종을 하거나 진단검사를 하는 경우, 또는 밀접접촉자나 확진자로서 격리를 해야 해 일을 쉬어야 할 때 중소기업·비정규직 노동자는 대기업·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자유롭게' 휴가를 사용하지 못했음.
- 지난 3개월간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어떠한 불이익에 대한 걱정 없이 '백신·검사·격리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정규직 노동자는 70.8%, 비정규직 노동자는 48.0%였음.
- 고임금 노동자의 81.0%는 백신·검사·격리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했지만, 저임금 노동자는 절반 수준인 41.3%만이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한다고 답했음,
-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 1,413명에서도 결과는 비슷했음. 검사 이후 출근하지 않는 동안 근무가 무급휴가 처리된 비정규직 응답자는 42.2%, 정규직 응답자는 12.6%였음.
- 고임금 노동자의 경우 2.7%만이 무급 처리됐지만, 저임금 노동자는 절반이 넘는 56.4%가 무급 처리돼 큰 차이를 보였음. 5인 미만 기업 종사자 중 무급 처리된 비율도 40.2%로 공공기관 종사자 10.4%의 약 4배나 되었음.
- 설문에 응한 응답자는 총 2,000명으로, 그중 430명(21.5%)은 코로나19 확진 경험이 있었음.

(조규준, 동향분석실 책임연구원)